

쓰레기종량제란 무엇인가?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기준(안)

1. 머리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산업의 고도화와 인구 및 도시의 집중화 현상 등으로 쓰레기 발생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인구 1인당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유럽은 0.9kg, 일본은 1kg인데 비해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는 1.5kg에 이른다.

이처럼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체로 소각과 매립, 재활용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인류가 지금까지 소각과 매립에 가장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에 지구의 자정 능력의 한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직면해 있다.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 문제라든가, 매립에 따른 부지난은 물론 토양오염 문제 등이 이제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고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문제도 요컨대 '에코 밸런스'의 시각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국면에 도달해 있으며, 지구자원의 절감과 재활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경주되기에 이른 것이다.

쓰레기는 애초에 발생시키지 않는 게 최상의 대책이기는 하지만 물자를 이용해 삶을 영위하는 이상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 될 것이고, 배출된 쓰레기는 가능한 한 재활용함으로써 유한한 자원을 절감

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도 바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쓰레기종량제는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보다는 쓰레기 발생을 얼마나 줄여나가는가에 그 중요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 종량제는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그 처리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요약되는데, 그에 따라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게 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의도가 깔려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취지로 쓰레기 처리 수수료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92년에 한국폐기물학회에 의뢰하고 종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94년 4월부터 전국 33개 시·군·구에서의 시범실시에 이어 올해부터 전국 실시에 돌입했다.

2. 종량제 시행 조례 기준안

종량제는 시·군·구 등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따라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조금씩 형편이 다르다. 환경부는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준을 토대로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보완·발전시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가 마련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 기준'안을 살펴봄으로써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 기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일반폐기물 중 제7종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일반폐기물중 법 제14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철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1)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의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일반폐기물이 적절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3으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1)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2)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3)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4와 같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1)쓰레기봉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한다.

2)시장·군수·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시·군·구단체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해당○○시·군·구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5) 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1) 일반용봉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공공용봉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리·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통장·이장·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1)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1)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처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을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1)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의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자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개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매구)

1) 시장·군수·구청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4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별표1)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제2조, 제4조 및 제9조 관련)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냉장고	500l 이상	8,000
	300l 이상	6,000
	300l 미만	4,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5,000
	12인치 이상	3,000
세탁기	모든 규격	4,000
에어콘	264m ² 형 이상	8,000
	66m ² 형 이상	5,000
	66m ² 형 미만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탈수기	모든 규격	2,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2,000
장농	120cm장 1쪽	15,000
	90cm장 1쪽	10,000
소파	대형 6인용	8,000
	소형 4인용	5,000
책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식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피아노	어프라이트	10,000
	그랜드	15,000

·상기의 대형 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규정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제5조관련)

부 파 함 목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1. 폐기물투기금지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한 자(법 제7조)(별도 규정)			
2.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2항)			
가. 일반폐기물배출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500
나. 쓰레기봉투를 묶지 아니하고 일반 폐기물을 담아 배출한 경우	50		

(주) 1. 위반행위가 20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별표2)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종이컵, 팩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비닐코팅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3. 병류	·음료수병, 기타병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담배꽂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것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수 있음) ·물로 행군후 음료수병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농약병	
4.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위와 같음
5. 플라스틱류	·PET병 ·합성수지용기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폐유 용기류는 제외)

(별표4)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제6조 관련)

구분	봉투용량(l)	봉투규격(가로×세로, cm)	호칭두께(mm)
일반용	10	33 × 40	0.020
일반용	20	41 × 49	0.025
공공용 일반용	50	56 × 67	0.030
공공용 일반용	100	71 × 85	0.040